

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2차 정례회 행정·재무위원회
【2022. 11. 18.(금) 10:00】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(신청사건립추진단)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행 정 · 재 무 위 원 회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

(신청사건립추진단)

2022년 11월 18일

전문위원 장석현

I. 안건명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

II. 제출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1)

III. 기금명: 공용의청사건립기금

IV. 기금운용계획안

1. 기금 운용 총칙

-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설치목적: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·운용
- 설치년도: 1997년
- 재원조성: 일반회계 출연금, 구유재산 매각대금 등
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공용의청사건립 기금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
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
103,909,056	7,487,163	19,334,000	△11,846,837	92,062,219

1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수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 규모는 920억 6,221만 9천원이며, 신청사 건립비용 지출계획으로 전년도말 대비 118억 4,683만 7천원이 감소함

2. 자금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목	수입액	세부사업	지출액
합 계	111,396,219	합 계	111,396,219
이자수입	2,487,163	비용자성 사업비	19,334,000
예치금회수	103,909,056	예치금	92,062,219
전입금	5,000,000		

-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
 -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억 8,716만 3천원을 계상하고
 - 예치금회수는 '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1,039억 905만 6천원을 계상함
 -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함
- 지출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
 - 비용자성사업비는 신청사 건립비로 193억 3,400만원을 계상함

-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920억 6,221만 9천원을 계상함

3. 종합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「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
- 본 기금은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 되었지만, 청사 공간이 협소 및 노후화 되고 분산된 공공청사를 한 곳에 집적하여 60만 강서구민이 공유하는 열린 청사, 문화 청사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우리 구 주요 투자 사업임
-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착공을 앞두고 공사비, 감리비 등으로 193억 3,400만원의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이는 본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해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

<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 >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▪ 특정사업 운영 ▪ 특정자금 보유 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
확정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는 합 목적성 차원에서 자율 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
계획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추경예산 편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항목(분야·부문·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
결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의회 심의·승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

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
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
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章)·관(款)·항(項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